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3.

발 의 자 : 서삼석 · 윤준병 · 임미애
박용갑 · 조계원 · 문대림
김원이 · 문금주 · 신정훈
이정문 · 차지호 · 양부남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.

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, 조치결과 · 이행계획 ·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 등)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이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여 미이행 사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치결과·이행계획
·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협조 요청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2조(협조 요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22조의2(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 등)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이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등</u></p>

특별한 사정이 있어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여 미이행 사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치결과·이행계획·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